

의안번호	2206740
의 퇴 인	서미화의원
회 답 일	2024.12.27.
추계번호	24C6111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억 4,200만원, 2030년 34억 1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8억 6,000만원(연평균 31억 7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(안 제28조의4 신설)	29.4	30.5	31.7	32.9	34.1	158.6	31.7

주: 본 추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접 구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업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의4 신설 (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)	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화장품 구매·사용실태,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(제1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8조의4 신설 (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)	○	·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, 유사 사례인 「해외직구 등 수입 유통식품 안전관리」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「해외직구 등 수입 유통식품 안전관리」 사례를 준용함
 - 개정안에서는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「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」 사례를 유사사례로 준용함
- 추계기간 동안의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
 - 해외직접구매 화장품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추계 시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해외직접구매 화장품 실태조사 수행에 따른 사업비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본 추계에서 준용하는 유사사례와 같이 매년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함
 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「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」 사업을 통해 매년 해외직접구매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, 구매검사 및 자료구축과 위해의심, 부정물질 등 해외직구 원료, 성분 발굴을 수행 중이며 해당 예산은 2025년 기준 총 29억 4,200만원임
 - 해외직접구매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, 구매검사 및 자료구축은 용역을 통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 중이며 해당 예산은 2025년 기준 25억 4,200만원임
 - 해외직접구매 식품의 위해의심, 부정물질 등의 원료, 성분 발굴에 관한 예산은 2025년 기준 4억원임
-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에 따른 인건비로서 추계기간 동안 해외직접구매 화장품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억 4,200만원, 2030년 34억 1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8억 6,000만원(연평균 31억 7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(안 제28조의4 신설)	29.4	30.5	31.7	32.9	34.1	158.6	31.7

주: 본 추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접 구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업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「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」 사업을 유사사례로 준용하여 추계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장우윤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4741	jangwy93@assembly.go.kr